

2023년도 제4회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시설주사보 · 공업서기 · 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4회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7급(시설주사보), 8급(공업서기), 8급(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예정인원·담당예정업무

채용분야	임용예정 기관	임용예정 직급	담당 예정 업무	선발예정 인원	관련분야
시설	대구교도소	시설주사보 (7급)	○ 「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 해당업무 - 교정시설 건축분야의 시설공사 - 시설안전 유지 관리 등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1명	일반
	상주교도소	시설주사보 (7급)		1명	일반
공업(전기)	부산구치소	공업서기 (8급)	○ 「교도관직무규칙」 제86조 해당업무 - 교정시설 전기관련 안전점검 -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1명	일반
간호	부산교도소	간호서기 (8급)	○ 「교도관직무규칙」 제75조 해당업무 - 환자 간호 / 의무관의 진료 보조 / 교정시설의 위생 보조 - 외상치료 및 응급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1명	일반
	안동교도소	간호서기 (8급)		1명	일반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제1항,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1항,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63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 방법 : 선발(응시) 분야별 1개 임용예정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시 결격)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인 자(2003.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요건

임용직급	주요자격 및 경력요건
시설주사보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기사 :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만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범위 결정)
공업서기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input type="radio"/> 기술사 : 전기안전 <input type="radio"/> 기능장 : 전기 <input type="radio"/> 기사 : 전기, 전기공사 <input type="radio"/>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input type="radio"/> 기능사 : 전기 <input type="radio"/>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전기관련 공사, 유지·보수 등 분야) 근무한 경력자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과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력 인정범위 결정)
간호서기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직무관련 분야 및 근무경력 인정요건	
시설주사보	시설안전 유지 관리, 건축분야 시설공사 업무 등 ※ 「근무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고 우대요건 반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공업서기	교정시설 전기관련 안전점검,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 등 ※ 「근무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소속 직원의 경력은 제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해당 응시 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고 우대요건 반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간호서기	환자간호, 진료보조, 혈액투석 업무 등 ※ 우대경력 인정시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함(보건소 경력은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 - 인정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함

다. 응시자격 관련 안내

- 임용예정기관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요건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자격 요건)’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4. 우대 요건

가.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하고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시설주사보)	
A급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품질시험,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소방설비, 건설안전
B급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수
C급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플라스틱창호, 방수, 실내건축, 철근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공업서기)	
A급 :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B급 : 산업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 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C급 :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자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간호서기)
A급 : 전문간호사, 보건교육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1급, 의사, 약사, 한약사 B급 : 보건교육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정신보건간호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조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물리치료사 C급 : 보건교육사 3급

나.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하며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통신 · 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A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B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A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B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2.1.1.통합이전 워드1급 포함)

- 우대 근무 경력은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우에 따라 차등 적용
 - ※ 근무경력 인정조건은 응시자격요건 직무관련분야 인정요건과 동일하며 응시자격 요건에 적용된 관련분야 경력은 제외
-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 상근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
 - ※ 시간제 근무: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 **경력이 불명확(대표자 직인, 근무기간, 담당업무 미기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가산점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7년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3급 이상 소지 시 가산점 부여
 -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단계(적극적 서류전형 시행 시)에서만 적용

5. 선발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합격선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근무경력이나 응시자격 요건을 제외한 복수 내지 상위 자격증 등에 대한 평가
- 한국사능력검정은 가산요건으로 적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고	'23. 9. 26.(화) ~ '23. 10. 6.(금)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 페이지	
원서접수	'23. 10. 4.(수) ~ '23. 10. 6.(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교도소 총무과(시설주사보) · 부산구치소 총무과(공업서기) · 부산교도소 총무과(간호서기) · 안동교도소 총무과(간호서기) · 상주교도소 총무과(시설주사보)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류전형심사	'23. 10. 20.(금)	시설주사보	대구지방교정청
		공업서기	
		간호서기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23. 10. 23.(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3. 10. 27.(금)	시설주사보	대구지방교정청
		공업서기	
		간호서기	
채용점검위원회	'23. 11. 6.(월)	대구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23. 11. 8.(수)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23. 11. 13.(월)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임용	'23. 11. 20.(월)	대구교도소	시설주사보 1명
		부산구치소	공업서기 1명
		부산교도소	간호서기 1명
		안동교도소	간호서기 1명
		상주교도소	시설주사보 1명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 접수기간 : 2023. 10. 4.(수) ~ 10. 6.(금)

※ 접수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 접수처

임용예정기관	접수처 소재지 (우편번호)	연락처
대구교도소	우편번호 : 42963 주 소 :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	053 - 632 - 4501 (내선 204)
부산구치소	우편번호 : 47016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68	051 - 309- 8533
부산교도소	우편번호 : 46700 주 소 :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대저1동)	051 - 718 -1524
안동교도소	우편번호 : 36621 주 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054 - 851 - 2530
상주교도소	우편번호 : 37123 주 소 :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2길	054 - 537-152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채용 응시원서 재증**”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8. 제출서류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서류 불비(미비)로 인한 불이익(응시자격, 경력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별첨 2】

1. 응시원서 1부 【별첨 3】

- 응시 직급별 응시수수료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 7,000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 【별첨 4】

3. 자기소개서 【별첨 5】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첨 6】

4.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3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7.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별첨 7】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연·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만 인정),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첨부하여야함.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제출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 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등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 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첨 8】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첨 9】

11. 근무경력확인서 1부 【별첨 11】

12. 응시의사 철회,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 1부 【별첨 12】

-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에 제출(응시원서 접수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만 해당)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0.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및 시험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원본을 반환하며 사본은 대구지방교정청에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11. 20.(월) - '24. 5. 20.(월)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각 시험전형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공지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	☎ 053 - 230 - 5820
대구교도소	총무과	☎ 053 - 632 - 4501(내선 204)
부산구치소	총무과	☎ 051 - 309 - 8533
부산교도소	총무과	☎ 051 - 718 - 1524
안동교도소	총무과	☎ 054 - 851 - 2530
상주교도소	총무과	☎ 054 - 537 - 1524

【별첨 1】

일반직(시설주사보)공무원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응시 기관명 기재(예: 대구교도소, 상주교도소)	복지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공사 하자관리 ○ 교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 교정시설물 안전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전문지식 역량)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능력 ○ (변화관리 역량)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및 유연한 사고능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경력 및 전문 지식 ○ 법규 및 시공업무 장비 운용 등에 대한 전문 지식 ○ 도면 작성에 관한 지식(CAD프로그램 활용) ○ 건축 시공 및 공사 감독에 관한 지식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술 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기 사 :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및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시설공사 등 분야) 근무한 경력자 <p>※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p>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2017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일반직(공업서기)공무원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응시 기관명 기재(예: 부산구치소)	복지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 전기시설의 일상점검 및 관리 ○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관련 제반업무 등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전문지식 역량)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능력 ○ (변화관리 역량)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및 유연한 사고능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시설관리를 위한 관련지식 ○ 유사시 전기 등 기계류 시설관리를 위한 응급조치 관련지식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 전기 ○ 기능사이상 자격증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전기관련 공사, 유지·보수 등 분야) 근무한 경력자 <p style="text-align: center;">※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p>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2017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일반직(간호서기)공무원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응시 기관명 기재(예: 부산교도소, 안동교도소)	의료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에 대한 보건·간호 및 의무관 진료보조 등 의료업무 ○ 교도소 또는 구치소 내의 위생업무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전문지식 역량)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능력 ○ (변화관리 역량)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및 유연한 사고능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건위생 지식 및 간호에 관한 전문지식 ○ 상담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지식 ○ 수용자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통 능력 ○ 교도소·구치소 현안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관리 능력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 요건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응시자격요건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 병원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2017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제출서류 목록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 분야
	응시 기관명 기재	응시 분야 기재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제출유무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응시자격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필수)		
5	직무관련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6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9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10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11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12	근무경력 확인서		

※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반드시 "O" 표시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시) : 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 7,000원,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표 회신용 소봉투 기재 예시)

※ 보내는 사람(접수처)

원서접수 담당자(해당기관에서 작성)

등기 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여야 함

응시원서 우편접수요령

- ① 응시원서 등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② 회신용 우편봉투에 응시자 성명·주소를 기입
- ③ 대봉투 우측상단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표시
- ④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와 응시표 **회신용 봉투**를 넣어 해당기관에 송부

□ □ □ □ □ □

※ 받는사람(응시자)

(성명) 홍 길 동(응시자 본인)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호

□ 1 □ 1 □ 1 □ 2 □ 2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급	성 명
응시 분야 기재	(서명 또는 인)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직급	성명
응시 분야 기재	(서명 또는 인)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 【별첨1】와 연계하여 작성

【별첨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 등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비위면직 여부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자) 채용 후 퇴직일까지 (불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3) 제공하는 민감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중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 . .

성명 : (서명)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별첨 9】

복수국적,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복수국적, 자격요건 등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대구출입국·외국인 관리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별첨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지방교정청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11】

근무경력 확인서(예시)

※ 근무경력 확인서는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된 것에 한해 기록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근무경력						근무기간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홍길동	'85.11.11.	○○	10	5	1		19	8	30	9	4	0		
		○○	14	7	1		16	12	31	2	6	0		
		○○	17	1	1		18	5	30	1	5	0		
* 근무경력이 있을 시, 예시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작성자 : (인/서명)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시 험 종 류			
반환신청인 관련 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응 시 번 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e-mail)
반환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 반환받을 계좌번호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 명의의 계좌(계좌사본 첨부)를 기입하십시오.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			
구분	반 환 사 유	응시수수료 납부액	반환청구금액
<input type="checkbox"/>	3일 이내 응시의사 철회		
<input type="checkbox"/>	응시수수료 과오납		
<input type="checkbox"/>	시험실시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불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응시수수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대구지방교정청장 귀하			

- ※ 응시수수료 반환 사항의 구분란 중 해당되는 반환사유란 좌측 에 와 같이 표시하십시오.
- ※ 응시의사 철회 사유로 반환을 신청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본 신청서를 최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소인분까지 인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응시수수료는 응시의사 철회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하신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